

전자금융거래이용약관 개정 신규조문대비표

변경전 제1장 총칙	변경후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1) 본 약관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본 약관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④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에 등록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 기타 "회사"가 지정한 수단을 말합니다.	④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회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에 등록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 기타 "회사"가 지정한 수단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1) "회사"는 "회원"이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하고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좌동
(2) "회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이하 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회원"에게 교부하고 "회원"이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좌동
1. 약관의 중요내용을 "회원"에게 직접 설명	좌동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장치를 통하여 "회원"이 알기 쉽게 표시하고 "회원"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좌동
(3)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서비스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서비스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즉시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4) "회사"는 제(3)항의 공지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공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게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신설>	(5) "회원"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거래내용의 확인)	제4조 (거래내용의 확인)
(1)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의 거래내용("회원"의 "오류" 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이 거래내용에 대해 서면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좌동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회원"의 거래내용 서면 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회원"에게 전자문서 전송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좌동
(3)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좌동
①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좌동
②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좌동
③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좌동
④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좌동
⑤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좌동
⑥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좌동
⑦ "회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좌동
⑧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좌동
(4)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좌동
① "회원"의 "오류" 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좌동
② 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사항	②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5) "회원"이 제(1)항에서 정한 서면 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좌동
①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6 NHN 플레이뮤지엄	①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72
② 이메일 주소: help@payco.com	좌동
③ 전화번호: 1544-6891	좌동
제5조 ("거래지시"의 철회 등)	제5조 ("거래지시"의 철회 등)
(1) "회원"이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회원"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4조 제⑤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의 전송 또는 서비스 페이지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서비스 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17조, 제27조, 제33조, 제37조, 제39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 "회원"이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회원"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4조 제⑤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의 전송 또는 서비스 페이지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서비스 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17조, 제28조, 제34조, 제38조, 제40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회원"은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좌동
제8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제8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1) "회사"는 회원이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주석,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합니다.	좌동
(2) 전 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좌동
① 다음 각 목의 거래기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좌동
가. 제4조 제(3)항 제①호 내지 제⑥호에 관한 사항	좌동
나.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좌동
다.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좌동
② 다음 각 목의 거래기록은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좌동
가. 제4조 제(4)항 제①호에 관한 사항	좌동
나.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좌동
다.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좌동
라. 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사항	<삭제>
제11조 ("회사"의 책임)	제11조 ("회사"의 책임)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좌동
①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단,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 주체이거나 사용, 관리 주체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①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②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좌동
③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좌동
(2)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① "회원"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좌동
② "회원"이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좌동
③ "회사"가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1)항 제③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③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1)항 제③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④ "회원"이 제③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누설·노출 또는 방치하거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 제(1)항 제③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좌동
⑤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좌동
(3) "회사"는 금융거래정보통신망의 보안성, 신뢰성, 정확성, 투명성, 접근성,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경우에는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중단 일정 및 중단 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좌동
제12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제12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1) "회원"은 "회사"의 서비스 페이지 하단에 게시된 분쟁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좌동
(2) "회원"이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좌동
(3) "회원"은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제18조 (한도 등)	제18조 (한도 등)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회원"의 결제 수단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회원"의 결제 수단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기준을 "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제3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제3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제21조 ("접근매체"의 관리)	제21조 ("접근매체"의 관리)
(1)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나 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설정된 유·무형의 카드로서 "회사"가 승인한 고유한 카드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페이코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좌동
(2)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통지를 받기 전에 발생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통지를 받기 전에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된 금액에 대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22조 (충전)	제22조 (충전)
"회원"은 다음의 방식으로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 할 수 있습니다.	좌동
1. 계좌출금, 무통장입금, 기타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으로 구매	1. 계좌출금, 무통장입금

<p>2. 제휴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 혹은 마일리지 또는 포인트의 전환</p> <p>제25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 등)</p> <p>(1) "회원"은 "회사"가 포인트 양도 관련 서비스 페이지 등에서 공지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회사"가 양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p> <p>(2) "회원"이 전 항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한 뒤에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를 이유로 "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받은 "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 환급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p> <p>(3) "회사"는 전 항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p>	<p>2. 기타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으로 구매</p> <p>제25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 등)</p> <p>(1) "회원"은 "회사"가 포인트 양도 관련 서비스 페이지 등에서 공지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홈페이지-고객센터 또는 양도 관련 서비스 페이지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지불수단을 통해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회사"는 양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p> <p>(2) "회사"가 전 항 단서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 제한이 적용되는 지불수단의 목록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변경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홈페이지-고객센터 또는 양도 관련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그 사실을 공지하고, "회원"에게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제26조 (환급 등)</p> <p>(1) "회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인 경우 "충전" 취소가 가능하며, "충전"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p> <p>(2) "회원"은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재된 잔액 전부를 "회원"에게 환급합니다. 다만, "회사" 또는 제3자가 발행한 기프트카드 등 상품권을 구매하여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 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에는 환불수수료가 부과되며, 이 때 "회사"는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합니다.</p>	<p>제26조 (환급 등)</p> <p style="text-align: center;">좌동</p> <p>(2) "회원"은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재된 잔액 전부를 "회원"에게 환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홈페이지-고객센터 또는 환급 관련 서비스 페이지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지불수단을 통해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의 100분의 60이상 사용된 경우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3) "회사"가 전 항 단서에 따른 환급 신청 제한이 적용되는 지불수단의 목록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변경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홈페이지-고객센터 또는 환급 관련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그 사실을 공지하고, "회원"에게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4)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환급 시 "회사"의 홈페이지-고객센터 또는 환급 관련 서비스 페이지에 공지된 환불수수료 부과여부 및 부과기준에 따라 환불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제2항 단서에 따라 100분의 60이상 사용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제6항에 따라 환불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신규로 환불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기존 환불수수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 1개월 전에 홈페이지-고객센터 또는 환급 관련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그 사실을 공지하고, 개별 통지합니다.</p>
<p>(3) "회사"는 제2항에 의한 수수료가 "회원"이 유상으로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회원"의 환불청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p> <p>(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수수료 공제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p> <p>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가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p> <p>②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p> <p>③ "회원"이 잔액 환급을 신청한 경우. 다만, "회사" 또는 제3자가 발행한 기프트카드 등 상품권을 구매하여 "충전"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양도 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최종 "충전" 시 그 시점의 잔액 기준)을 사용한 경우</p> <p>④ "회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단,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p> <p>가.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p> <p>나.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와 관련되는 법령으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관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p> <p>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더라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가맹점이 충분하여 가맹점이 제공하는 재화·용역을 구입하려는 "회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p> <p>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p>	<p>(5) "회사"는 제4항에 의한 수수료가 "회원"이 유상으로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회원"의 환불청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p> <p>(6) 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좌동</p> <p>③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최종 "충전" 시 그 시점의 잔액 기준)을 사용하고, 잔액 환급을 신청한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좌동</p>
<p>(5) "회사"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을 5년보다 짧게 정한 경우, "회원"은 유효기간 경과 후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회사"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잔액의 90%를 "회원"에게 지급합니다.</p>	<p>(7) 좌동</p>
<p>(6) "회사"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최종 소지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 최종 소지자가 "회사"에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자가 "회사"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구매자에게 환불한 경우 "회사"는 환불에 관한 책임을 면합니다.</p>	<p>(8) 좌동</p>
<p>(7) 본 조 제1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p>	<p>(9) 본 조 제1항 내지 제7항에도 불구하고,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p>
<p>(8) 제4항 제4호에 따른 환급의 경우,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에 관한 내용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맹점 축소 또는 이용 조건이 변경되는 날로부터 30일 이상 게시합니다</p>	<p>(10) 제6항 제4호에 따른 환급의 경우,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에 관한 내용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맹점 축소 또는 이용 조건이 변경되는 날로부터 30일 이상 게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27조 (이용제한)</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회원"이 보유한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있거나,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정지 요청 등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 양도 및 환급 등을 제한하거나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2) "회사"는 전 항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p>
<p>제27조 ("거래지시"의 철회) ~ 제29조 (유효기간 및 소멸시효)</p>	<p>제28조 ("거래지시"의 철회) ~ 제30조 (유효기간 및 소멸시효)</p>
<p style="text-align: center;">변경없음</p>	<p style="text-align: center;">변경없음</p>
<p>제30조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1) "회사"는 "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금(이하 "선불충전금"이라 합니다)을 "회사"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2) "회사"는 매 영업일 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점검하며, 매 분기말(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모 금액 등을 홈페이지(www.payco.com) 등에 공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우선 지급합니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선불충전금"의 지급시기, 지급장소,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①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② 해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③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④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31조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금의 보호 및 지급)</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1) "회사"는 "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금(이하 "선불충전금"이라 합니다) 100분의100 이상의 금액을 은행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별도관리합니다.</p>
<p>① 신탁</p>	<p>① 신탁</p>
<p>② 예치</p>	<p>② 예치</p>
<p>③ "회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보증보험</p>	<p>③ "회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보증보험</p>
<p>(2) "회사"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회원"의 재산이며, "선불충전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회원"은 "회사"가 "선불충전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p>	<p>(2) "회사"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회원"의 재산이며, "선불충전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회원"은 "회사"가 "선불충전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p>
<p>(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고, "회원"의 청구에 따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회원"에게 "선불충전금"을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불충전금"의 지급사유, 지급시기, 지급방법,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회사가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게시합니다.</p>	<p>(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고, "회원"의 청구에 따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회원"에게 "선불충전금"을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불충전금"의 지급사유, 지급시기, 지급방법,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회사가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게시합니다.</p>
<p>①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p>	<p>①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p>
<p>②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p>	<p>②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p>
<p>③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p>	<p>③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p>
<p>④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p>	<p>④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p>
<p>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p>	<p>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p>
<p>(4) "회원"은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제(3)항에 따라 지급 청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p>	<p>(4) "회원"은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제(3)항에 따라 지급 청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p>
<p>① "회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p>	<p>① "회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p>
<p>② "선불충전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p>	<p>② "선불충전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p>
<p>(5) 제(3)항에 따라 "회원"에게 "선불충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p>	<p>(5) 제(3)항에 따라 "회원"에게 "선불충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p>
<p>① "회원" 식별 정보</p>	<p>① "회원" 식별 정보</p>
<p>② "회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충전금에 관한 정보</p>	<p>② "회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충전금에 관한 정보</p>
<p>③ "선불전자지급수단" 식별 정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를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회원"을 식별할 수 없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p>	<p>③ "선불전자지급수단" 식별 정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를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회원"을 식별할 수 없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p>
<p>④ 그 밖에 "선불충전금" 지급에 필요한 정보</p>	<p>④ 그 밖에 "선불충전금" 지급에 필요한 정보</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32조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 및 게시)</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1) "회사"는 "회원"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계약 체결시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원"에게 고지합니다.</p>
<p>①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방법</p>	<p>①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방법</p>
<p>②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의 명칭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관한 정보</p>	<p>②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의 명칭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관한 정보</p>
<p>③ 제31조 제(3)항(선불충전금의 보호 및 지급조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지급사유, "회원"의 청구 방법 등 "선불충전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p>	<p>③ 제31조 제(3)항(선불충전금의 보호 및 지급조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지급사유, "회원"의 청구 방법 등 "선불충전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p>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여야 하고, 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 변경시 즉시 게시된 고지 내용을 변경합니다

[제4장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제32조(정의)
~ [제7장 착오송금] 제40조(착오송금에 관한 사항)

[제4장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제33조(정의)
~ [제7장 착오송금] 제41조(착오송금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변경없음

<부칙> 본 약관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5년 2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